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]

- 점검일시 : 2020.08.11 (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전용현,이경석

### ○ 가설비계 안전(방재시설부)

- 비개착 터널(DSM공법) 공사를 위하여 설치한 가설비계는 지지를 강연선으로 하고 있어 충분한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바, 붕괴재해예방을 위하여 보완 요망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(작업 발판의 구조)



### ○ 흠막이가시설 안전(방재시설부)

- 터널 종점부 작업장에 설치된 흠막이 가시설은 붕괴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보완 요망.

- ① 토류판 미설치구간 즉시 보완
- ② 유출수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배면의 침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(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)



○ 터널 안전(방재시설부)

- 비개착 터널(DSM공법)작업구간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

①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배수 철저 요망.

② 유출수 발생 및 상부 차량하중으로 인하여 도로침하가 발생되고 있으니 비가 그치는 즉시 도로보수 요망. 또한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원카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인성 확보 요망.

③ 아울러 도로 침하가 최소화되도록 DSM 플레이트 추진, 강재복공 설치와 굴착 및 막장막이 설치 대한 시공 관리 철저 요망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○ [모범사례]터널 안전(방재시설부)

- 터널내 비상벨 뿐만 아니라 무선통신 3사의 안테나 설치를 통하여 터널 내부의 비상연락체계 고도화 달성 및 근로자 안전환경 증진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0조(작업의 중지) ②사업주는 터널 내의 재해발생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



등 통신설비 등을 설치

